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○○. ○. ○. 영업양도 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〇〇. 〇. 〇.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"〇〇〇"라는 상호의 단란 주점을 양도받았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금까지 영업허가의 명의변경 절차에 협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.
- 2. 따라서 원고는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

1. 갑 제1호증

1. 갑 제2호증

영업양도계약서

양도대금영수증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서류 각 2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 O O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


목 록

허가번호 제500호

대표자 ○○○

주민등록번호 111111 - 1111111

주소지 ㅇㅇ시 ㅇ구 ㅇㅇ길 ㅇㅇ

명칭 ㅇㅇㅇ

소재지 이이시 이이구 이이길 이이

영업의 종류 단란주점영업

허가년월일 2000.0.0.

허가자 ㅇㅇ구청장. 끝.

| 관할법원 | ※ 아래(1)참조 | 소멸시효 | 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 www |
|----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부수 |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| | |
| 비 용 | 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 | | |
| 불복절차 | 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| | |
| 및 기 간 | ·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| | |
| 기타 | 아판결저가 충달된 달부터 2부 이내(민사소중법 제396소 제1항)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종래 다방 용도로 사용되어 왔던 임대인소유인 건물의 지하 부분을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명의로 다방영업허가를 받아 다방업을 경영하되 임대차기간 만료시에는 그 허가명의를 임대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방영업허가를 받아 다방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건물 부분을 명도한 경우, 이는 임차인이 그 영업을 양도한때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임대인이 다방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,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방영업허가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, 임대인은 이를 소구할 수 있음(대법원 1997. 4.25. 선고 95다19591 판결) | | |

※ (1) 관 할

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 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 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